

#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

금융위원회 / 한국거래소 귀중

2023년 02월 23일

권유자: 성명: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주)  
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, 30층(신천동)  
전화번호: 02-3213-8154

작성자: 성명: 최동민  
부서 및 직위: 운용팀 팀장  
전화번호: 02-3213-8154

## <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>

<b>1.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</b>			
가. 권유자	롯데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(주)	나. 회사와의 관계	본인
다. 주총 소집공고일	2023년 02월 23일	라. 주주총회일	2023년 03월 10일
마. 권유 시작일	2023년 02월 28일	바. 권유업무 위탁 여부	위탁
<b>2.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</b>			
가. 권유취지	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		
나. 전자위임장 여부	전자위임장 가능	(관리기관)	한국예탁결제원
(인터넷 주소)	인터넷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">https://evote.ksd.or.kr</a> 모바일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/m">https://evote.ksd.or.kr/m</a>		
다. 전자/서면투표 여부	전자투표 가능	(전자투표 관리기관)	한국예탁결제원
(전자투표 인터넷 주소)	인터넷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">https://evote.ksd.or.kr</a> 모바일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/m">https://evote.ksd.or.kr/m</a>		
<b>3. 주주총회 목적사항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무제표의승인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관의변경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사의보수한도승인			

# I.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

## 1. 권유자에 관한 사항

성명 (회사명)	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	소유비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롯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 사(주)	0	0	0	본인	-

-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

성명 (회사명)	권유자와의 관계	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	소유 비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롯데쇼핑(주)	최대주주	보통주	121,484,442	50.00	최대주주	-
계	-	-	121,484,442	50.00	-	-

## 2.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

### 가.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(의결권 수임인)

성명 (회사명)	주식의 종류	소유 주식수	회사와의 관계	권유자와의 관계	비고
김민영 (롯데에이엠씨(주))	보통주	1,000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현준호 (롯데에이엠씨(주))	보통주	0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최동민 (롯데에이엠씨(주))	보통주	1,412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김재용 (롯데에이엠씨(주))	보통주	0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조민진 (롯데에이엠씨(주))	보통주	2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유석균 (주)국민은행)	보통주	0	사무수탁회사 직원	-	-

### 나.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

성명 (회사명)	구분	주식의 종류	주식 소유수	회사와의 관계	권유자와의 관계	비고
김민영 (롯데에이엠씨(주))	개인	보통주	1,000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현준호 (롯데에이엠씨(주))	개인	보통주	0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
성명 (회사명)	구분	주식의 종류	주식 소유수	회사와의 관계	권유자와의 관계	비고
최동민 (롯데에이엠씨(주))	개인	보통주	1,412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김재용 (롯데에이엠씨(주))	개인	보통주	0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조민진 (롯데에이엠씨(주))	개인	보통주	2	자산관리회사 직원	-	-
유석균 (주국민은행)	개인	보통주	0	사무수탁회사 직원	-	-

### 3.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

#### 가. 권유기간

주주총회 소집공고일	권유 시작일	권유 종료일	주주총회일
2023년 02월 23일	2023년 02월 28일	2023년 03월 09일	2023년 03월 10일

#### 나. 피권유자의 범위

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(2022년 12월 31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

## II.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

### 1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

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

### 2.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

#### 가.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(전자위임장)

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	전자위임장 가능
전자위임장 수여기간	2023년 02월 28일 9시 ~ 2023년 03월 09일 17시
전자위임장 관리기관	한국예탁결제원
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인터넷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">https://evote.ksd.or.kr</a> 모바일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/m">https://evote.ksd.or.kr/m</a>
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	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17시까지)

#### 나.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

#### □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

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	X
우편 또는 모사전송(FAX)	X
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	O
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	O
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(발행인에 한함)	X

#### -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

홈페이지 명칭	인터넷 주소	비고
롯데리츠	<a href="http://www.lottereit.co.kr">www.lottereit.co.kr</a>	-

-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

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.

### □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

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

<위임장 접수처>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, KB국민은행 신관4층 유석균 (우: 07332)
- 전화번호 : 02-2073-0488

### 다.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

해당 사항 없습니다.

## 3.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

### 가.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

일 시	2023년 03월 10일 오전 9시 30분
장 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롯데월드타워31층

### 나. 전자/서면투표 여부

#### □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전자투표 가능 여부	전자투표 가능
전자투표 기간	2023년 02월 28일 9시 ~ 2023년 03월 09일 17시
전자투표 관리기관	한국예탁결제원
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인터넷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">https://evote.ksd.or.kr</a> 모바일 주소 : <a href="https://evote.ksd.or.kr/m">https://evote.ksd.or.kr/m</a>
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	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17시까지)

#### □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

서면투표 가능 여부	해당사항 없음
서면투표 기간	-
서면투표 방법	-
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	-

#### 다. 기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

##### □ 주주총회 운영 안내

- 의결권 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.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III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

#### □ 재무제표의 승인

##### 제1호 의안)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가.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(재무상태표) · 손익계산서(포괄손익계산서) 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

※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재 무 상 태 표

제 8(당)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

제 7(전) 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

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(단위 : 원)

과 목	제 8(당) 기		제 7(전) 기	
자 산				
유동자산		56,708,372,270		64,761,746,436
현금및현금성자산	21,476,137,035		5,160,937,272	
매출채권및기타채권	10,443,140,007		10,337,761,734	
기타금융자산	24,139,592,252		42,132,441,422	
기타비금융자산	566,415,076		7,088,952,028	
당기법인세자산	83,087,900		41,653,980	
비유동자산		2,307,153,694,846		2,327,816,209,414
투자부동산	2,307,153,694,846		2,327,816,209,414	
자 산 총 계		2,363,862,067,116		2,392,577,955,850
부 채				
유동부채		1,060,346,004,230		1,121,924,723,513
차입금및사채	1,047,261,676,583		1,104,055,904,554	
기타지급채무	-		-	
기타금융부채	7,204,820,050		5,625,503,285	
기타비금융부채	5,879,507,597		12,243,315,674	
비유동부채		195,792,680,090		137,353,571,486



과목	제 8(당) 기		제 7(전) 기	
차입금및사채	89,453,458,175		30,923,939,451	
기타금융부채	90,222,027,522		89,021,126,012	
기타비금융부채	16,117,194,393		17,408,506,023	
부 채 총 계		1,256,138,684,320		1,259,278,294,999
자 본				
자본금	121,484,442,000		121,484,442,000	
자본잉여금	1,060,934,641,668		1,060,934,641,668	
결손금	(74,695,700,872)		(49,119,422,817)	
자 본 총 계		1,107,723,382,796		1,133,299,660,851
부 채 및 자 본 총 계		2,363,862,067,116		2,392,577,955,850

### 포괄손익계산서

제 8(당)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

제 7(전)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

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(단위 : 원)

과목	제 8(당) 기		제 7(전) 기	
영업수익		57,920,144,213		57,479,677,985
영업비용		23,812,030,108		23,731,552,186
영업이익		34,108,114,105		33,748,125,799
금융수익	546,683,252		315,553,869	
금융비용	20,539,989,189		15,035,109,631	
기타수익	16,646		18,256	
기타비용	11		3	
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		14,114,824,803		19,028,588,290
법인세비용				-
당기순이익		14,114,824,803		19,028,588,290
기타포괄이익				-
총포괄이익		14,114,824,803		19,028,588,290
주당이익				
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		58		78

###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

제 8(당)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

제 7(전)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

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(단위 : 원)

구 분	제 8(당) 기 (처분예정일: 2023년 03월 10일)	제 7(전) 기 (처분확정일: 2022년 09월 26일)
I. 미처분이익잉여금	(74,695,700,872)	(49,119,422,817)
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	(88,810,525,675)	(68,148,011,107)
당기순이익	14,114,824,803	19,028,588,290
II. 이익잉여금처분액	34,777,339,371	39,691,102,858
배당금	34,777,339,371	39,691,102,858
III.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	(109,473,040,243)	(88,810,525,675)

-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

: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

### 제2호 의안) 제8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

#### □ 목 적

- 당사 정관 제26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연도의 배당을 확정하고자 함.

#### □ 관련규정

- 정관 제26조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
  - 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.
    7.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.

- 아 래 -

###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

제 8(당)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

제 7(전)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

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(단위 : 원)

구 분	제 8(당) 기 (처분예정일: 2023년 03월 10일)	제 7(전) 기 (처분확정일: 2022년 09월 26일)
I. 미처분이익잉여금	(74,695,700,872)	(49,119,422,817)

구 분	제 8(당) 기 (처분예정일: 2023년 03월 10일)	제 7(전) 기 (처분확정일: 2022년 09월 26일)
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	(88,810,525,675)	(68,148,011,107)
당기순이익	14,114,824,803	19,028,588,290
Ⅱ. 이익잉여금처분액	34,777,339,371	39,691,102,858
배당금	34,777,339,371	39,691,102,858
Ⅲ.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	(109,473,040,243)	(88,810,525,675)

\* 당기 배당금 총액(34,777,339,371원)

= 당기순이익(14,114,824,803원) + 감가상각비(20,662,514,568원)

\* 주당 배당금: 143원

-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 
"(총배당금/총발행주식수(242,968,884주))\*보유주식수"로 산출

\* 배당금지급예정일: 2023년 3월 22일(수)

\* 상기 표의 당기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

### 제3호 의안) 제9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

목 적

- 당사의 제9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함.

관련규정

-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

-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

제9기 사업계획의 요약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제9기(E)
영업수익	58,745
영업비용	23,986
영업이익	34,758
당기순이익	5,217

구분	제9기(E)
배당금총액	25,880

\* 배당금총액의 경우,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,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%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으며, 이익배당 시,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.

\* 상기 사업계획은 금리 등 시장상황 및 리츠의 운용,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함.

#### 제4호 의안) 제9기 및 제10기 차입(사채발행)계획 승인(변경)의 건

목적

- 당사의 제9기 및 제10기 차입(사채발행)계획 변경을 확정하고자 함.

관련규정

- 정관 제26조 제1항 제2호
-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

- 아 래 -

제9기 차입(사채발행) 계획 변경

- 당사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(2022.9.26 개최)에서 총 5,000억원 한도로 제9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음
- 당사는 2022년 10월에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2,000억원(만기 3개월) 상환을 위하여, 2023년 1월 16일에 담보대출 1,300억원과 담보부사채 7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, 2023년 3월 17일 만기예정인 담보대출 4,580억원의 차환을 위하여 담보대출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. 이에 따라, 기존 차입계획 5,000억원을 9,00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

제10기 차입(사채발행) 계획

- 제10기(2023.7.1~ 12.31)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총 3,910억원(담보대출 2,800억원, 사채 1,110억원)의 차환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할 계획임. 차환시에는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,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, 추진할 예정임
- 이를 위해 당사는 기존 보유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별 허용가능한 LTV 범위 내에서 차환 및 운용자금, 신규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5,000억원 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

## □ 정관의 변경

### 제5호 의안) 정관변경 승인의 건

가.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-	-	해당사항 없음.

나.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38조(이사회의 결의사항)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 권한을 갖는다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del>11.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(단,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)</del></p>	<p>제38조(이사회의 결의사항)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 권한을 갖는다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del>11.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</del></p> <p><del>12.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</del></p>	<p>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b>(신설)</b>	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(단,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)	
<p>제 46 조 (차입 및 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·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. <del>다만, 정관이나 「상법」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.</del></p>	<p>제 46 조 (차입 및 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·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. <b>다만, 제38조 제1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고, 기타 정관이나 「상법」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.</b></p>	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
<b>(신설)</b>	<p>제46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시장</p>	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	<p>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2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·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 본 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
<b>(신설)</b>	제46조의3 (신주인수권부사	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	<p>채의 발행)</p> <p>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·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.</p> <p>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</p>	<p>효율성 증대</p>

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	<p>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

※ 기타 참고사항

- 본 정관변경은 선행조건인 국토부 변경인가,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후 진행 예정

## □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

### 제6호 의안) 제9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

#### □ 목 적

- 당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 연도의 감독이사 보수를 확정하고자 함.

#### □ 관련규정

- 정관 제26조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 및 정관 제40조(감독이사의 보수)
- 이사의 수 ·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

(당 기)

이사의 수 (사외이사수)	2 ( 0 )
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	보수총액: 4,800만원

(전 기)

이사의 수 (사외이사수)	2 ( 0 )
실제 지급된 보수총액	4,800만원
최고한도액	-

※ 기타 참고사항

-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
-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
- 보수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은행영업일까지 지급